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관광개발사업 등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태안군, 부여군

내 용

충청남도는 관광개발 및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시·군에 재교부하여, 해당 시·군에서는 [불입]과 같이 태안군 2015년 ○○○○ 10대 모델 사업인 ‘○○○ ○○○○ 쉼터 및 리모델링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수 과정에서 수급인(계약자)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용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4.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 태안군 및 부여군에서는 총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 헬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집행한 내용의 확인 및 증빙서류 사실 확인 업무 등 정산 등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총 5건의 공사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데도 약

14,220천원 상당액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태안군수, 부여군수는**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약 14,220천원 상당액을 회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주의] 앞으로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